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석사학위 취소 사실의 통지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70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석사학위 취소 사실의 통지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08.
3. 회 부 일 : 2025. 8.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해당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석사학위 취소 사실의 통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석사학위가 취소된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및 통지)</u> <u>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여한 학위(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u>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가 취소된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① 학위 취소의 근거 마련

- 현행법 시행령 제52조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현행법 제35조²⁾에 따라 수여한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석사학위를 근거로 취득한 박사학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하지만, 해당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된 자료가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취소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석사학위가 취소된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된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자료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위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억제하여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개정안의 내용 중 학위 수여 취소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 시행령상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권익 제한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음.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	개 정 안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및 통지)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여한 학위(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에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 원회의 심의
--	--

다만,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 원격대학(학사이하), 기술대학 등
 의 학위 수여 및 그 취소에 대해서도 동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도
 록 하고 있어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율의 일관성 측면(일부는 법
 른에서 일부는 하위 법령에서 규율)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 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 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 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 또한, 개정안은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입학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안 제35조의2제1항제2호)하고 있는데, 학위 수여의 취소는 침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도 개정법률안 통과 시 나머지 학교 유형인 전문대학, 원격대학(학사이하),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의 취소는 여전히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학위 취소사실의 통지

- 석사학위 취소사실의 통지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위 수여 대학은 학위 취득자가 해당 학위를 활용하여 이후 어느 상급 학위과정에 진학하였는지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대학이 수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도 석사학위가 취소된 자가 실제로 박사과정에 진학했는지, 또는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지를 학위를 취소한 대학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학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학위(전문학사, 학사 등)와 달리 석사학위 취소에

대해서만 상급학위(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취소 사실 및 자료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법체계의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